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발전설비”란 원동력설비·발전기계통설비·신재생에너지·비상용예비 전원설비 및 전기저장장치·무정전전원장치와 같이 발전소 또는 전기수용장소 등에 설치되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저장 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전기저장장치”를 “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”로 한다.

시행규칙 별표1, 별표2, 별표3, 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 · 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“발전설비”란 원동력설비 · 발전 기계통설비 · 신재생에너지 · 비 상용예비전원설비 및 전기저장 장치 · 무정전전원장치와 같이 발전소 또는 전기수용장소 등에 설치되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 기를 저장 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.</u>
제3조(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 사계획) ① (생 략)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“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(低壓) 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”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 (<u>전기저장장치</u> 는 제외한다)를 말 한다.	제3조(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 사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 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</u> --.

현행			개정안		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의 대상(제3조제1항 관련)			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[별표1]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 상(제3조제1항 관련)		
공사의 종류	인가가 필요한 것	신고가 필요한 것	공사의 종류	인가가 필요한 것	신고가 필요한 것
1.발전설비 가. 설치공사	(생략)	(생략)	1.발전설비 가. 설치공사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나. 변경공사	(생략)	(생략)	나. 변경공사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다) 신재생에너 지 발전설비 등	(생략)	(생략)	다) 신재생에너 지 발전설비 등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(1)태양광설 비	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(2)연료전지 설비	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(3)전기저장 장치	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<신설>			(4) 무정전전원 장치	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전 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 분의 1 이상(정기검 사 기간 내 이차전 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한다.)의 대체	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전 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 의 1 이상(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 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.)의 대체
			(가)이차전지	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전 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 분의 1 이상(정기검 사 기간 내 이차전 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한다.)의 대체	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전 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 의 1 이상(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 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.)의 대체
			(나)전력변환 장치	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 치의 설치 또는 대 체	출력 1만킬로와트 미 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
			(다)부대설비		온도·습도·분진 조절 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
(4) 전기설비 계통	(생략)	(생략)	(5) 전기설비 계통	(생략)	(생략)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[별표2]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·신고 방법 (제4조 관련) 1. 제출서류 비고 1.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 2.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3.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<u>전기저장장치</u>는 제외한다. 2.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<table><tr><th>전기설비의 종류</th><th>기재사항</th><th>기술자료(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)</th></tr><tr><td>1.발전소 가. 원동력설비 (생략) 다.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)태양광설비 2)연료전지설비 3)전기저장장치 <u><신설></u></td><td>(생략)</td><td>(생략)</td></tr><tr><td>4) 전기설비 계통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전기설비의 종류	기재사항	기술자료(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)	1.발전소 가. 원동력설비 (생략) 다.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)태양광설비 2)연료전지설비 3)전기저장장치 <u><신설></u>	(생략)	(생략)	4) 전기설비 계통			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[별표2]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·신고 방법 (제4조 관련) 1. 제출서류 비고 1.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 2.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3.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전기저장장치와 <u>무정전전원장치</u>는 제외한다. 2.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<table><tr><th>전기설비의 종류</th><th>기재사항</th><th>기술자료(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)</th></tr><tr><td>1.발전소 가. 원동력설비 (생략) 다.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) 태양광설비 2) 연료전지설비 3) 전기저장장치 <u>4) 무정전전원장치</u></td><td>(생략)</td><td>(생략)</td></tr><tr><td>5) 전기설비 계통</td><td></td><td><u>(1) 이차전지의 종류, 용량, 전압, 전류, 개수 및 용도</u> <u>(2) 전력변환장치의 종류, 용량</u> <u>(3) 보호계전장치의 종류</u> <u>(4) 온도·습도·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, 용량 및 대수</u> <u>(1) 단선결선도</u> <u>(2) 용량계산서</u> <u>(3) 전기저장방식 설명서</u> <u>(4)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</u> <u>(5) 제어방식 설명서</u> <u>(6) 공조시설의 배치도</u></td></tr></table>	전기설비의 종류	기재사항	기술자료(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)	1.발전소 가. 원동력설비 (생략) 다.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) 태양광설비 2) 연료전지설비 3) 전기저장장치 <u>4) 무정전전원장치</u>	(생략)	(생략)	5) 전기설비 계통		<u>(1) 이차전지의 종류, 용량, 전압, 전류, 개수 및 용도</u> <u>(2) 전력변환장치의 종류, 용량</u> <u>(3) 보호계전장치의 종류</u> <u>(4) 온도·습도·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, 용량 및 대수</u> <u>(1) 단선결선도</u> <u>(2) 용량계산서</u> <u>(3) 전기저장방식 설명서</u> <u>(4)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</u> <u>(5) 제어방식 설명서</u> <u>(6) 공조시설의 배치도</u>
전기설비의 종류	기재사항	기술자료(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)																	
1.발전소 가. 원동력설비 (생략) 다.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)태양광설비 2)연료전지설비 3)전기저장장치 <u><신설></u>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
4) 전기설비 계통																			
전기설비의 종류	기재사항	기술자료(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)																	
1.발전소 가. 원동력설비 (생략) 다.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) 태양광설비 2) 연료전지설비 3) 전기저장장치 <u>4) 무정전전원장치</u>	(생략)	(생략)																	
5) 전기설비 계통		<u>(1) 이차전지의 종류, 용량, 전압, 전류, 개수 및 용도</u> <u>(2) 전력변환장치의 종류, 용량</u> <u>(3) 보호계전장치의 종류</u> <u>(4) 온도·습도·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, 용량 및 대수</u> <u>(1) 단선결선도</u> <u>(2) 용량계산서</u> <u>(3) 전기저장방식 설명서</u> <u>(4)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</u> <u>(5) 제어방식 설명서</u> <u>(6) 공조시설의 배치도</u>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[별표3]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(제6조제4항 관련) 1. 수력발전소에 관한공사 (생략) 11.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.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. <u><신설></u>	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[별표3]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(제6조제4항 관련) 1. 수력발전소에 관한공사 (현행과같음) 11.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.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<u>12.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</u> <u>가.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</u> <u>나.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</u> <u>13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</u> <u>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</u>

현행				개정안			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[별표4]				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[별표4]			
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(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				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(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			
구분	대상	시기	비고	구분	대상	시기	비고
1. 전기사업용전기설비 : 기력, 내연력, 가스터빈, 복합화력, 수력(양수), 풍력, 태양광,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 <신설> 발전소(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.	(1)~(9) (생략) <신설>	(생략)	(생략)	1. 전기사업용전기설비 : 기력, 내연력, 가스터빈, 복합화력, 수력(양수), 풍력, 태양광, 연료전지,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(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.	(1)~(9)(현행과 같음) (10) 무정전전원장치·전기설비 계통 (가)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,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(나) (가) 이외의 설비	(현행과 같음) 1년 이내 2년 이내	(현행과 같음)
2. 자가용전기설비 가. 발전설비: 기력, 내연력, 가스터빈, 복합화력, 수력, 풍력, 태양광,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 <신설> 발전소(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.)	(생략) (7) 전기저장장치·전기설비 계통 (가)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,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(나) (가) 외의 설비 <신설>	(생략) (생략) (생략) <신설>	(생략) (생략) (생략)	2. 자가용전기설비 가. 발전설비: 기력, 내연력, 가스터빈, 복합화력, 수력, 풍력, 태양광, 연료전지,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(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.)	(현행과 같음) (7) 전기저장장치·전기설비 계통 (가)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,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(나) (가) 외의 설비 (8) 무정전전원장치·전기설비 계통 (가)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,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(나) (가) 이외의 설비	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1년 이내 2년 이내	(현행과 같음)